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8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신동근・이정문・이상헌

김윤덕 • 유정주 • 노웅래

조승래 • 변재일 • 박찬대

장경태 · 고용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음.

이에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출생증명서를 송부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는 출생증명서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 ④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 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만에 관여한 사람은 대법원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7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러하지 아니하다. 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 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 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출생증명서를 송부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신 | 설> |
|------|----|
| \ L. | |

제122조(과태료) (생략)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는 출생증명서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22조(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